

I. 일반

회사가 구매를 하는 경우, 공급자와 회사 간 모든 법률관계는 아래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공급자가 정한 조건 및 본 계약조건과 차이가 있는 약정은 서면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떠한 계약 사항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거나 어떠한 물품 혹은 용역을 수령하거나 또는 대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II. 계약의 체결과 변경

1. 본 조건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물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모든 개별계약과 변경계약, 부수계약, 계약종료 선언 또는 통지 등은 문서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급자가 발주서를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승낙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물품 공급의 경우에 적용되는 품질보증계약, 물류계약 그리고 세플러그룹의 운송지시 등은 본 계약의 일부분입니다. 위 문서들은 www.schaeffler.kr ("공급업체" 카테고리)에서 찾으실 수 있으며,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공됩니다.

III. 물품 및 용역의 공급 범위 / 범위의 변경 / 보수용 부품 / 하도급업자

1. 공급자는 계약상 의무 이행 및 적시에 공급자에게 고지된 해당 납품물의 사용목적에 있어 중요한 모든 데이터 및 환경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합니다. 청약의 경우 회사에게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급자는 청약을 하기 전에 현지 환경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과 기술 또는 기타 법규 준수를 위한 문서를 모두 검토하여 제반 상황에 대해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자는 제 3자의 예비작업뿐만 아니라 현지상황, 정확성, 실현가능성과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제공 받은 모든 문서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급자는 의구심이 가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세한 사유를 기재하여 지체 없이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계약 이행 방법을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공급자가 물품의 설계 및 제작 상 변경을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자에게 이러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공급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러한 변경을 시행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이러한 변경으로 인한 결과, 예를 들어 납품일자나 추가 비용 또는 감소 비용 등에 관해서는 상호 만족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관한 계약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체결되기 힘든 경우라면 회사는 이러한 변경에 따른 결과를 합리적인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생산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회사에 보수용 부품으로 공급하는 물품 또는 부품을 본 공급 계약이 종료된 이후 15년 동안 합리적인 계약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매 일반 조건

세플러코리아/세플러안산

SCHAEFFLER



4. 공급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신의 의무를 하도급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IV. 가격 / 대금 지급 조건

1. 양 당사자가 상호 동의한 가격은 확정가격입니다. 별도의 조건이 없는 한, i) 계약 조건에 따른 이행시점 및 ii) 적절하고 입증 가능한 인보이스의 수령시점으로부터 법규상 중소기업의 경우는 60일 또는 기타 기업의 경우는 90일까지는 대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회사가 정해진 납품일자 이전에 물품을 수령하고 검수한 경우라도, 대금 지급기간은 정해진 납품일자로부터 기산됩니다. 인보이스에는 주문번호, 회사의 계정 및 고객 참조번호, 하역 장소, 공급자번호, 부품번호, 부품 개수, 부품 별 가격, 납품 별 수량 등이 명기되어야 하며 사본 없이 제출됩니다. 공급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신용전표절차에 참여할 것에 동의합니다.
2. 공급자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해당 손해배상청구를 회수하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V. 납품일 / 정부 허가 / 수출통제

1. 모든 주문품은 지정장소인도조건(DAP, 인코텀즈 2010)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되며, 별도로 정한 조건이 없는 한 포장 및 보관이 포함됩니다. 회사 그리고 회사가 지정한 수하인은 발송일자에 해당 선적에 관한 통보를 받습니다. 모든 선적에는 회사의 발주번호, 제품번호 그리고 공급자번호가 기재된 송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한 날짜와 기한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공급자는 납품 지체가 있을 경우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의 이유와 예상 지체기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지체의 이유가 공급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공급자는 회사에게 이러한 이유를 적시에 통보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물품의 수입과 사용에 있어 정부의 허가나 통지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물품이 수출 라이선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각각의 개별 수출 통제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납품 당시 최신의 EU와 미국 법률에 따라 계약 물품의 수출 통제 지정에 관하여 이를 회사에게 알려야 하나, 반드시 서면 통지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VI. 완성품의 검수

구매 일반 조건

세플러코리아/세플러안산

SCHAEFFLER



1. 완성품의 검수는 완성 이후 각 검수기록에 회사가 공식적인 확인 서명을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사할 수 없는 계약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공급자는 회사에게 검사를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적시에 하여야 합니다. 공급자는 이러한 검사요구에 회사가 대응하지 못했다거나 대금을 지불하였다거나 또는 이미 사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검수가 의제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관청에서 요구하는 특히 인정받은 전문가에 의한 검수는, 계약이행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지 않는 한 완성품 검수 이전에 공급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무결점 성능 인증 또는 공식적인 승인 및 검수의 경우, 공급자가 완성품 검수 이전의 적절한 시기에 회사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VII. 기밀 유지 / 정보

1. 공급자는 (i) 도면, 문서, 노하우, 샘플, 제조기기, 모델,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정보(이를 총칭하여 '정보'라 함)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고, (ii) 이러한 정보를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하청 공급업자를 포함한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iii) 회사가 정한 바 이외의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사본 및 복제물에도 준용됩니다. 기밀 유지 의무는 (i) 해당 정보에 기밀 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하고, 공개 시점에 공급자가 이미 적법하게 획득한 정보, (ii) 공급자가 기밀 유지 의무에 적용 받지 않고 추후 적법하게 획득한 정보, (iii) 계약의 위반 없이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 또는 (iv) 공개용 정보 및 독립적 사용에 대하여 공급자가 허가를 받은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회사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광고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정보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등의 모든 다른 권리를 보유합니다.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본이 제작될 수 있습니다. 사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사본이 제작되는 시점에 당사로서 이전됩니다. 공급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수탁자로서 해당 사본을 보관함에 있어 당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공급자는 자신에게 제공된 사본을 포함한 모든 문서 및 기타 자료를 자신의 비용으로 적절하게 보관하고, 완벽한 조건에서 유지하며, 이들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서는 문서 및 자료를 반환 또는 파괴함에 동의해야 합니다. 공급자에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러한 자료를 보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공급자는 해당 자료의 완전한 반환 혹은 파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공급자가 상기 VII 1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한화 40,000,000 원의 계약상 위약금이 부과되며 매 위반 발생시 즉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산정되는 계약상 위약금을 적용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상 위약금 기지급액과 손해배상청구액은 상계됩니다.

다.

VIII. 품질 관리

공급자는 지속적으로 물품 및 용역의 품질을 모니터 하여야 합니다. 공급자는 납품 이전에 물품이 하자가 없고 상호 합의된 기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이를 회사에서 면으로 보증하여야 합니다.

IX. 보증책임 / 비용보전 / 보증기간 / 손해배상

1. 회사는 납품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견상 확인 가능한 결함, 동일성에 있어서의 차이 또는 수량 차이만을 검사할 것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하자가 있을 시 공급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할 것입니다. 또한 통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도 이를 즉시 통보할 것입니다. 상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공급자는 하자에 대한 통보가 지나치게 늦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인도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아래의 조건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법규상의 권리를 가집니다. 산업안전이 위협 받는 경우, 막대한 손실이 따르는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의 고객에 대한 납품 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공급자에게 통보 후 자체적으로 보수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해당 하자를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3. 만약 공급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3자를 사용하는 경우, 공급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그 제3자에 의해 고용된 기타 어떤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4. 개별 법률에서 더 긴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공급자는 납품 수령일 또는 검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러한 검수가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요구된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보증책임에 따른 보완 이행(하자 보수 또는 완전물급부)의 경우, 위 기간은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물품 사용이 불가능한 시기까지 연장됩니다. 보완 이행은 위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하자에 대한 모든 청구 기간은 회사의 최종 고객이 제기한 청구가 이행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까지이나, 납품일로부터 5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5. 소유권의 하자로 인해 제3자로부터 어떤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공급자가 해당 하자에 대하여 책임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급자는 이러한 청구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제3자가 제조물 책임을 근거로 제기하는 모든 청구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면책은 공급자가 직접 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엄격한 책임이 적용되는 사안에는 공급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면책이 적용됩니다.

X. 회사 부지 또는 시설 내에서의 계약 이행

1. 공급자가 회사의 부지 또는 시설 내에서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할 경우, "수급업체(협력업체)를 위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www.schaeffler.kr ("공급업체" 카테고리)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제공됩니다. 공급자는 회사의 보안담당자들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2. 공급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거나 지난 6개월 간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었던 자를 공급자 자신의 계약의무이행을 위해 회사의 부지 또는 시설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XI. 회사가 제공한 자재, 포장재 및 금형

원료, 부품, 컨테이너, 특수 포장재, 금형, 측정도구 또는 소재나 유사 물품(각각 '부수 물품')은 회사의 재산입니다. 부수 물품의 가공, 부합, 혼화가 발생한 경우, 회사와 공급자는 새로운 물품의 공동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은 새로운 물품의 총 가액에서 부수 물품이 차지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급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부수 물품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XII. 금형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에 관하여 회사가 입증된 비용에 기여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금형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회사는 대금을 지불한 시점부터 금형에 관한 (공동)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금형은 공급자에게 대여됩니다. 공급자는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금형을 (법적 또는 사실적 의미로) 처분, 위치 변경 또는 영구적으로 사용 불가능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금형에 회사 소유 또는 공유재산임을 표시합니다. 공급자는 금형의 유지, 수리, 교체 비용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교체 전 금형과 동일한 비율에 따른 지분으로 교체된 금형을 소유합니다. 금형이 공동 소유인 경우 회사는 공급자의 지분에 대하여 우선매수의 권리를 가집니다. 공급자는 회사 (공동)소유의 금형을 오로지 납품 물품의 제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납품이 끝난 후에 공급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즉시 해당 금형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반환된 공동 소유의 금형에 관하여, 회사는 공급자에게 공급자 지분의 현재 가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형을 유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공급자는 공급자의 파산(또는 회생) 신청이나 장기 거래 중단의 경우에도 금형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급자는 상호 동의한 범위 또는 이러한 범위가 없을 때에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금형을 보험에 가입합니다.

XIII. 소프트웨어

납품 범위 조건에 표준화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지 않은 한, 공급자는 물품의 인도로부터 5년 간 비용에 대한 적절한 상환의 대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변경/개선함에 동의합니다.

XIV. 불가항력 / 장기간 인도불능

1. 자연재해, 폭동, 정부의 조치 등 예측예방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이러한 장애가 지속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공급자는 계약상 의무에서 면책됩니다.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한 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이를 충분히 알려야 하며, 이러한 상황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한 계약 당사자 일방은 해당 상황이 종료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 대하여 장기간 인도불능, 대금지급 중단, 파산절차 개시, 자산부족으로 인한 파산 절차 개시 거부 또는 유사 절차 개시가 발생한 경우라면, 다른 일방은 계약의 미이행 잔여 부분을 해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만일 공급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된 물품의 제조를 회사 또는 제3자에게로 이전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협조에는 관련 물품 제작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업계 통상적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XV. 컴플라이언스

- 어떤 형태의 참여이든 관계 없이 공급자 내지는 공급자의 임직원 또는 공급자가 위임한 제3자로 하여금 행정법 상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나 형법상 수사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행위 또는 부작위는 금지됩니다. 특히, 부패행위 관련 법률 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이하 "위반"이라 칭함). 공급자는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급자는 자신의 임직원 및 공급자가 위임한 제3자의 대표자들이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회사의 서면 요청에 따라, 공급자는 위의 조치, 특히 컴플라이언스 실행의 내용과 상태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게 제출할 것입니다. 공급자는 회사의 서면요청에 따라,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설문지에 성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응답하여야 하며 회사에게 이러한 설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설문은 3년 내 한 번 이하로 합니다.
- 해당 관청이 공급자의 위반에 대하여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회사에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또한 공급자가 위반을 하였다는 혐의가 있을 경우, 회사는 이러한 위반에 대한 정보를 서면형식으로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공급자가 이러한 위반을 교정하고 향후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을 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이를 중단하여야 하며,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XVI. 기타

- 모든 인도 및 이행 완료 장소는 당사가 정한 최종 장소여야 합니다.
- 계약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대한민국 국제사법과 국제 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전속관할의 합의가 없는 한,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공급자를 상대로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 만일 본 구매일반조건 중 일부가 무효이거나 무효로 될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효력이 있습니다.